

『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6년 2월 24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6년 2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6년 3월 4일

제202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상하수도사업소장 김 휴 진

나. 제안이유

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,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부과 기준(가정용)과 형평성 차원에서,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고자 함

다. 주요내용

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 업종 구분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(안 별표 3)
- 주거용 오피스텔의 가구분할조정을 할 경우 세대별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 납부 규정을 명확히 함(안 제15조)
- 기숙사의 가구분할조정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급수전을 따로 설치하여야 함(안 제32조)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수도법」 , 「지방자치법」 , 「지방공기업법」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붙임
- 합 의 : 감사담당관실, 기획예산담당관실,
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, 하수과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장 학 곤

○ 본 「구미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은

- 주거용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 일반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,
- 현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오피스텔 및 기숙사에 대하여 적용 중인 수도요금 부과 기준을, 일반용 요금에서 일반주택 및 공동주택의 요금부과기준인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